#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65

발의연월일: 2024. 12. 10.

발 의 자:고민정·진선미·장철민

임호선 • 박정현 • 강경숙

박성준 • 이병진 • 서미화

김준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 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 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 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 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 야 하다.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 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 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경우 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 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 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 다. 10. ~ 13. (생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